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1991년 12월 23일

나. 회부일자 : 1991년 12월 23일

3. 제안이유

광역소방행정체제 전환에 따라 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체제를 정비 활성화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시·군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를 통합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4. 주요골자

가. 조례명칭 개정

○ 시·군 조례 → 도 조례

나. 추천권자 및 인원조정(제3조)

○ 추천권자 : 소방서장, 읍, 면장 → 의용소방대장(부녀대, 지역대 포함)

○ 추천범위 : 장학생수 2배수 범위 → 의용소방대 1개대당 2명 범위내

다. 선발권자 조정(제4조)

○ 선발권자 : 시장·군수 → 군소·소방서장

○ 결과보고(신설) : 소방서장·군수 → 도지사

라. 장학생 정원조정(제5조)

○ 소방서 군당 15명

→ 의용소방대 및 부녀의용소방대원수에 따라 차등조정(최대 25명)

(대원 60~110명 기준 10명, 20명당 1명 중원)

마. 장학금 지급절차(7조) : 시·군 예산 → 도 예산

바. 지급정지 사유보고자 조정(제8조)

○ 소방서장, 읍·면장이 시장·군수에게 보고

→ 소방서장·군수가 도지사에게 보고

사. 장학생의 관리권자 조정(제9조)

○ 시장·군수 → 소방서장·군수

아. 장학금 특별회계 설치권자 및 관리권자 조정(제10조)

○ 설치권자 : 시장·군수 → 도지사

○ 설치기관 : 시·군 → 도

자. 경과규정 신설(부칙 제2조)

○ 시·군 조례신발 장학생 → 도 조례 선발장학생으로 간주

5. 검토의견

충청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검토한바

가. 종전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가 설치 운영해오던 의용소방대가 소방법(법률 제4419호 1991. 12. 14공포) 개정으로 인하여 소방행정체제가 광역소방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

개정된 소방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을 시·도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의용소방대 운영경비도 시·군 예산에서 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조정된 바 있음.

나. 따라서 시·군 조례로 제정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제도를 도 조례로 전환하게 되어 종전 시·군에서 시행하여 오던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체계를 정비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 의용소방대원의 활성화 및 사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역화합 안정 차원에서 충청북도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지급조례안을 승인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